

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

제3장 (서비스무역) 및 제4장 (금융서비스)

보조금에 대하여,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범위는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의 적용범위와 같은 것으로 양해된다.

어떤 상황에서는,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왜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 인정되며, 당사국들은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의 협상에 주목한다.

다른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자국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양해된다.

제3.6조 - 내국민대우

당사국의 지방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에 대하여, “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”라는 용어는 그 지방정부 또는 당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.

제3.14조 -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

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12조제2항가호는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상에서 약속한 것 외의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제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. 다만, 그러한 제한은 그 분야의 시장에 동일한 접근을 향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기준 하에 적용된다.

이상의 증거로,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양해록에 서명하였다.

2005년 12월 15일,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.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.

대한민국을 대표하여

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

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

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

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